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신분증 규정

▶ 규정신분증

구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규정 신분증
일반인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등
대학(원)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등 ※ 주의 :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음
중/고등학생 (한국내 소재 학교)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초등학생 (한국내 소재 학교)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다음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규정 신분증의 사본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의 신분증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 관련

▶ 본인이 신청한 시험장의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입실 완료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입실 완료시간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완료 시간
TOPIK I	1교시	듣기·읽기	09:20까지
TOPIK II	1교시	듣기·쓰기	12:20까지
	2교시	읽기	15:10까지

▶ 다음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시험장과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환불 처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음)

▶ 응시자는 배부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짝수), 면수,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문제지 교체를 요구 합니다.)

▶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실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

▶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TOPIKII의 경우,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안내

▶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등



● 답안지 작성 관련 안내

-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답안지 작성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 사용가능합니다.
- ▶ 객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부정확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주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답안지 작성을 잘못된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와 문제지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놓고,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처리 안내

-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또는 2년간 응시 제한과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예시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자가 따르지 않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아이패드, PDA 등 일체)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다른 수험자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로 하는 행위
문제 유출·배포와 관련된 행위
성적증명서를 위·변조 하거나 위·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한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토픽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의 상세 내용은 토픽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신원불명확자 서약서'를 작성한 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 결시자,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작성 후 기한 내 신분증 미 제출자, 중도포기자, 부정행위자 등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문제 무단 배포 금지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